서울고등법원 2024년 3월 선고 중요 판결·결정[1)]

민 사

2022나203533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33민사부 2024. 2. 1.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0. 4. 24. 피고와 사이에 A회사(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
- B회사(운송업체)는 2020. 6. 24. 원고에게 '선하증권 원본건으로 화물선취보증서 원본 보내주셔야 화물인도지시서 발행 가능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송하인을 A회사, 수하인을 하나은행의 지시인, 통지처를 원고로 한 B회사 명의의 선하증권(변경 전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송부함
- B회사는 2020. 6. 25. 원고에게 '수입자가 변경되었으니 어제 보낸 서류를 무시해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0. 6. 24.자로 송하인을 A회사, 수하인을 피고, 통지처를 피고로 한 B회사 명의의 선하증권(변경 후 선하증권)을 발행함
- 이 사건 물품은 2020. 6. 24. 중국에서 선적되어 2020. 6. 25.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는데, 원고는 2020. 6. 25.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B회사는 원고가 변경 후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 인도를 거부함

□ 쟁점

- 변경 전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적극)
- 선하증권의 수하인 변경의 위법성 여부(적극)

□ 판단

- B회사의 2020. 6. 24.자 메일에 기재된 화물인도지시서와 화물선취보증서 모두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서류인 점, 만약 변경 전 선하증권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물품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송이 이루어진 셈이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무역 거래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변경 전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다고 보아야 함
- 선하증권은 작성 후 송하인에게 교부되기 전이나 송하인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되는 등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이라면 발행청구권자인 송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하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송하인인 A회사의 요청 없이 피고가 위법하게 운송업자에게 수하인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수하인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됨 (원고승)

---

1) 일부 이전 판결·결정을 포함하고, 민사, 가사, 행정, 형사의 사건분류 가나다순.

2022나2013443 임금 청구의 소

[제15민사부 2024. 3. 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외국계 담배 회사 / 원고들은 주로 외근을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
- 피고는 2014. 12. 31.까지는 근로자들 중 영업사원들에게 매일 1시간 분에 해당하는 고정잔업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5. 1. 1.부터 영업사원들의 고정잔업수당을 폐지하고 그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였음
- 원고들은 1심에서는 실제 외근한 만큼 법률상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임금체계 변경 전의 고정잔업수당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

□ 쟁점

- 임금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여부(적극)
- 임금체계 변경 전의 고정잔업수당을 구하는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시점(항소심 청구 변경 시)

□ 판단

- 변경된 임금체계에 의하면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목표달성률에 연동됨. 목표달성률이 100%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총액이 적어지고, 100% 초과인 경우에는 임금 총액이 많아지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적어지므로, 위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임
- 임금체계 변경 전의 고정잔업수당을 구하는 청구는 제1심의 청구를 유지하는 공격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항소심 청구 변경 시 소멸시효가 중단됨

  ① 종전 청구인 실제 연장근로의 이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청구인 반면 항소심에서 변경한 청구인 고정잔업수당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른 청구임. 각각의 요건과 효과가 다름, ② 소송물의 범위를 넓혀 해석하면, 뒤늦게 인지한 고정잔업수당에 관하여 기판력으로 인해 별소 제기가 불가능하거나, 최저임금 미지급분, 휴일·야간근로수당 등 다른 법률상 근거에 따른 임금 청구까지도 포괄하는 해석이 가능함. 어느 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소송당사자가 쟁점으로 삼지 않아 공방하지도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양측 소송당사자 모두에게 예측하지 못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안기게 됨
- 원고들의 고정잔업수당 청구 일부 인용(원고들 일부승)

2022나2052981(본소) 질권소멸통지 등/ 2023나2019837(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2023나2027739(반소) 부당이득금

[제16민사부 2024. 3. 21.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들이 원고2가 보유한 원고1의 주식을 매수하고 원고1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원고1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주식매매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들은 계약 체결 당일 원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500억 원(총인수대금의 10%)을 지급함
- 피고들은 기준일 이후 원고1의 재무제표에 부채와 영업손실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1의 인수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청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에 대한 협조(대금지급 이행 등)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요청을 거절, 원고들은 피고들의 거래종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인수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 몰취함

□ 쟁점

-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적극) 및 피고들의 이행거절 여부(적극)
- 계약금 몰취의 성격(위약벌) 및 범위(계약금 전액)

□ 판단

-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해제는 적법함

  ① 기준재무제표(2019. 6. 30.)는 당시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② 이 사건 인수계약상 추가 차입은 협의 사항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추가차입 결정 전 피고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음, ③ 피고들이 원고1에 긴급히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운영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들의 전환사채 발행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부당 거절에 해당, ④ 기준일 이후 원고1이 여객운송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및 그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운영으로 볼 수 있음.
-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인수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구하며 거래종결 요청에 불응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함
- 계약금 전액 몰취는 정당함

  ①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규정하고 있음, ② 위약벌에 관하여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음, ③ 총인수대금의 규모, 조속한 거래종결의 필요성, 거래 무산에 따르는 원고들의 유무형의 손해 등 고려하면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항소 및 반소 기각(피고패)]

2023나2025467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
[제4민사부 2024. 1. 18.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원고(드라마 제작업체)는 자신이 기획 · 제작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집필료 등을 일부 지급하였고, 피고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여 원고에게 송부함
-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하자 피고는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 원고는 위 극본의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저작물)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음 [항소기각(원고패)]
  ① 위 계약은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원고의 권리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극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피고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가 방영되면 피고에게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위 계약은 피고가 극본을 집필하고 원고는 그 극본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단순히 피고가 극본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보이지 않음. 위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함. 따라서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②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음

2023나2019752 손해배상(기) 심불기각 확정

[제19-3민사부 2023. 11. 15.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2. 2. 13.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종전 임차인 B에게 권리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28.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였음
- 피고는 2021. 3. 11.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0억 원에 매수하고 2021. 7.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22. 2. 12. C와의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C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C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음

□ 쟁점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등 참조).
- ① 피고는 2021. 8. 18. 원고에게 사옥 신축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②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사옥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예정하였으나 원고의 인도 거절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고, 결국 원고를 상대로 한 인도소송의 승소 확정판결 이후 사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③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문언 그대로를 거절 사유로 들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거절 사유가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라면 위 조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거절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실제로 거절 사유 그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신규 임대차계약 거절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원고 패)

2022나2049848 구상금

[제33민사부 2024. 2.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외국법인)가 A회사(국내법인)로부터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면서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A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어 원천징수의무자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에 대해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들이 법인세 등을 납부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함

□ 쟁점

- 원천징수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일부 적극)
- 조세 납부시 본세와 가산세의 충당 순서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판단

- 원천징수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원천납세의무자도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던 원천납세의무를 면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직접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할 권한이 있고, 이는 사법상의 구상권이나 사전구상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할 권한이 없는 점, 원천징수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구 국세징수법에는 본세와 가산세의 충당 순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가산금과 달리 가산세는 체납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증가하지 않으며, 체납자가 납부한 조세를 본세와 가산세 중 본세에 먼저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부한 조세가 본세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외국법인이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처음으로 쟁점이 되어 다투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1차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그에 대한 사전구상권의 성립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일부승)

2023나2024778 물품대금
[제9민사부 2024. 3.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대한민국)와 사이에 신경작용제의 중독예방과 뇌 손상방지, 치료효과 향상 등을 위한 신경작용제예방패치(이하 '예방패치')를 연구, 개발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차 임상시험 및 주성분 약물을 증량한 재시험을 각 시행하였는데, 6개 항목(약효발현시간, 약효지속시간, 피부부착력, 크기, 겉포장재크기, 의약품 품목허가 미획득)에서 기준미달로 판단되었음.
- 원고는 피고에 대해 기준 완화 및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중단과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를 통보함.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국고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피고가 기지급한 대금은 반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와 체결한 별개 물품계약의 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잔액만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가 위법하고, 설령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룬 개발성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대금채권이 일부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청구

□ 쟁점

- 계약해제 통보의 적법 여부(적극) 및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존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는 적법함

  ① 원고가 약정기한 내에 공급계약상의 예방패치를 개발하여 공급하지 못하였음, ② 피고가 기준완화 요청이나 사업기간 연장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음
-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있음

  ① 피고의 해제통보시까지 1차 임상시험 및 재시험을 통하여 예방패치 개발을 상당히 진척시키는 등 원고가 수행한 업무 부분 중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이 사건 예방패치 공급계약이 정한 원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 ②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원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까지 고려한다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부분의 비율은 전체 업무의 20%로 봄이 타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총 대금의 20%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원고 일부승)

2023라2154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40민사부 2024. 3. 8. 자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 및 채권자는 각각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음
-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M&A를 통하여 채무자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내용)만이 가결되어 인가되었음
-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채무자의 기존 임원은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한다' 고 정하고 있음
- 해임된 채무자의 기존 대표이사 및 일부 채권자(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로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

□ 쟁점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이미 해임된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 기존 경영권을 유지한 채로 회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M&A를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이미 해임된 대표이사는 채무자를 대표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음
  ①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채무자회생법 제246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채무자의 기존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해임되었음
  ② 채무자의 임원 등 선임권을 가진 기존 주주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바, 해임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항고를 허용할 실익도 낮음
-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권을 가지고(채무자회생법 제22조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인가될 수 있는 것인바,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해임된 기존 대표이사가 대표자로 제기한 채무자의 항고를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함 [항고 각하 및 기각(신청인 및 채권자 패)]

행 정

2023누53012 조합원지위확인 확정

[제9-3행정부 2024. 2.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형제관계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조부로부터 각 1/2 지분씩 증여받아 2013.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2016. 3. 8.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들은 2005. 3. 22.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함께 마쳤다가, 원고1은 2018. 7. 13.에, 원고2는 2020. 2. 7.에 각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함.
- 원고들은 2021. 12. 24. 각각 독립된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분양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을 묶어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함.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형제관계인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서로 분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함. 같은 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정하면서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중략)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함.
- 여기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분가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형제끼리의 분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항소기각)

  ① 도시정비법에는 “세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은 “세대주” 등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②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되, 예외적으로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같은 세대에 있던 토지등소유자들 일부가 독립된 경제적 단위를 새로 창설한 경우)에만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됨.

형 사

2023노37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확정 [제8형사부 2024. 3. 29.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안
- 피고인은 위 나체사진 촬영 다음 날 위 나체 사진을 삭제하여 협박 당시에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음

□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의미

□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와 문언 내용,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함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다시 정함 [원심 파기(유죄)]

2023노99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제7형사부 2023. 7. 14. 선고] <일반> 상고기각 확정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외국 경쟁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링크를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회사의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열고 링크를 통해 파일을 열람하면서 휴대폰으로 파일을 촬영하여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무단으로 유출함

□ 쟁점

-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유출' 범행에 대한 행위태양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영업비밀을 보관할 장소를 지정할 권한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보관할 장소로 지정한 곳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한 장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곳으로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본래 영업비밀을 보관하도록 지정한 장소이거나 영업비밀을 이동할 것을 승인한 장소로 봄이 타당함.
- 위 제18조 제1항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를 외국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제2항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제1항에서 요구하는 외국사용에 대한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일 뿐이어서 객관적 구성요건인 '유출'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2항에서 외국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유출'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1항의 '유출'의 의미를 외국사용에 대한 고의와 결부시켜 해외 유출의 위험이 있는 유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 위 처벌조항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유출의 의미를 제3자에 전달될 위험이 있는 유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 피고인이 재택근무용 시스템에 접속하여 승인받은 범위인 열람을 넘어 열람화면을 촬영하여 파일 내용을 피고인의 지배영역으로 옮기고 피해회사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영업비밀을 피해회사가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원심 파기(유죄)]